

전임교원의 교내겸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교내겸직교원의 임용절차와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내겸직교원이란 본교 전임교원이 본직 부서에 소속하면서 교내의 대학원, 학부, 학과, 전공 등(이하"겸직부서"라 한다)에서 강의와 연구,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전임교원을 말한다.

제3조(교내겸직 및 전보임용)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교 전임교원을 교내겸직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강의·연구과제 등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효과적인 교원 인력 활용이 필요한 경우
3. 겸직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교내겸직 기간) ① 겸직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② 겸직임용기간 중이라도 겸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겸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본직부서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5조(겸직교원의 직무) 교내겸직교원이 겸직부서에서 다음 각 호 1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강의
2. 연구
3. 학생지도
4. 논문지도
5. 기타 전공에 관련된 업무

제6조(겸직교원의 대우) 겸직교원은 학사 제반에 관하여 겸직부서의 교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7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제정 2015. 1.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